

## 경운대학교 대학입학전형회피·배제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학입학전형을 진행함에 있어 회피·배제에 대한 원칙과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'회피'라 함은 수험생과 친족 등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.
2. '배제'라 함은 수험생과 친족 등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평가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.
3. '친족' 및 '특수한 관계'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다.
4. '입학관련 업무 참여자'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교원 또는 직원과 「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운영규정」 제2조에 따른 교수사정관, 채용사정관, 전환사정관, 위촉사정관을 말한다.

**제3조(회피·배제 대상)** ①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수험생과 4촌 이내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다른 친족을 말한다)인 경우

②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수험생을 그 수험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

③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수험생을 그 수험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

④ 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

**제4조(회피·배제방법 및 책임)** ①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'회피'의 경우 수험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는 모집시기별 입학전형 실시 이전에 각 세부시행계획에서 명시한 '자진신고서'를 작성하여 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말정산자료, 인사카드자료, 가족장학사항 등을 활용하여 시스템 및 서류를 통해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로 확인된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는 대학입학전형 평가 및 관리 업무에서 배제한다.

③ 대학입학전형업무에 참여 중인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에게 회피·배제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업무에서 배제시킨다.

④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회피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
**제5조(회피·배제 시기)** ① ‘회피’는 자진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서접수 후 평가하기 전에 안내하여 자진신고 하도록 한다.

② ‘배제’검증은 지원자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및 서류검증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이후부터 평가하기 이전의 기간에 실시한다.

③ 재검증은 평가기간 중에 미확인 배제 사항이 있는지를 재확인한다.

④ 사후검증은 전형이 마무리되고 최초합격자 발표 이전에 실시한다.

**제6조(기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, 시행 상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규정심의요청안을 정한다.

**제7조(준용)** 대학입학전형회피·배제에 관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.

## 부 칙<2019.12.02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